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9월 24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월 24일(금)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9. 24.(금)	담당부서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금융위 뉴딜금융과
담당과장	강감찬 과장(044-203-3880) 최지영 과장(044-215-7610) 조창연 과장(02-2100-7859) 허혜인 과장(044-201-6600) 전수한 과장(02-2100-1690)	담 당 자	최윤성 사무관(044-203-3891) 전형용 사무관(044-215-7613) 정수영 서기관(02-2100-7858) 최혜원 사무관(044-201-6601) 박종혁 사무관(02-2100-1697)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旣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3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

4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향후 계획】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최윤성 사무관(☎ 044-203-38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Ⅰ 도입 배경

□ 한국은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21.4)

*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 기후정상회의 시 VIP 연설문 일부 -

○ 이러한 **중단선언은** 기후변화 대응·그린뉴딜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 국제사회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 UN사무총장, OECD 회원국에 대해 '21년 내 '석탄발전 중단'을 선언하고, '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으로 폐지 요청('21.3월)

○ 중단선언 이후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21.5), **P4G 정상회의**('21.5), **G7 정상회의**('21.6)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석탄발전 중단관련 논의를 선도**

□ 한편,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단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산업계 등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21.5)

○ 제 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 결정**

○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타국사례, OECD 등 국제기구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진행('21.5~7월)**

☞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함께 수렴· 반영하여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

Ⅱ 해외 동향

□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등 **국제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 **기존에는 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ECA) 중심**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해왔으나,

* G20 및 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 중단 선언(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 최근 P4G 등 **각종 다자회의*** 계기 **각 국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검토**

* **P4G 정상회의**(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 '21.5月), **유럽 7개국 재무장관회의**(화석연료 관련 수출금융 지원 중단 선언, '21.4月)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포함 총 14개국은 다자회의 계기 중단 선언에 참여

- 美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21.1), 세계 40여국이 참석한 **기후 정상회의('21.4)** 등 계기로 **논의 가속화**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 및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발표**

□ G7,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OECD 규약 개정** 논의 등도 함께 진행 중

○ G7은 **정상회의** 공동성명('21.6)을 통해 각 국 정부는 '21년 연내 **석탄화력발전 신규지원을 종료**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 **EU는 이사회**(21.1월)를 통해 제3국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대한 **기후 및 에너지 외교**('Climate and Energy Diplomacy')에 합의*

* **(주요내용)** 제 3국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즉각적 금융 중단 등 탄소배출저감이 없는 석탄 에너지원 활용 단계적 폐지

-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등 **국제적 논의가 반영된 OECD 석탄양해 개정안** 발의('21.4)

Ⅲ 가이드라인 내용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❶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민간기관도 유도해 나갈 계획**

❷ 공적 금융지원은 **ODA,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넓게 정의

❸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

❹ **旣 승인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1. 가이드라인 적용기관 및 공적 금융지원의 개념

□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한편,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 동 가이드라인에서 **공적 금융지원이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2. 중단 대상사업의 범위

□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

○ 현재 **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

* EU 개정안 제출('21.4)→OECD 참가국 1차 회의(6.15~16)→2차 회의(9.15~16)

< **※참고 : 'OECD 석탄양해' 개정 관련 EU측 공동발의 제안案(요약)** >

◇ **(원칙)** 다음과 같은 목적의 수출신용과 구속성 원조 즉각 중단

- **신규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
- ①**대기 또는 수질오염 저감** 목적, ②**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未충족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설비공급 금융지원**

◇ **(예외) 기후변화저감 기술인 CCS**(탄소포집·저장)**를** 적용한 **신규 및 기존 사업은 지원 가능**

□ 한편,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 **지원 가능한** 범위는 ①**금융약정 이행** 및 ②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 **해당**

* 이행성 보증(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스왑, 신용장 발급 등

Ⅳ 향후 계획 및 시행일

□ **(향후계획)**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 추진

□ **(시행일)** 동 가이드라인은 **'21년 10. 1일 부**로 **적용**